



고용창출장려금 · 고용안정장려금 · 고용유지지원금 · 직장어린이집 지원 · 장년고용안정지원금 · 청년내일채움공제

| 고용창출장려금

> 지원금별 안내 > 고용창출장려금

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, 실근로시간 단축,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

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,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

01.개요



주 근로시간 단축*, 실 근로시간 단축, 교대근로 개편,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"일자리 함께하기"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경우 지원

· 근로기준법 개정(법률15513호)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가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('18년 7월)

02.인건비 지원

1) 지원대상

- 모든 사업주(우선지원대상기업, 대규모기업)
 - ※ 지원 제외: (공통)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업종, 임금체불로 영단이 공개중인 사업주, (주 근로시간 단축제)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*
-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

2) 지원 요건

-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
 - 교대제 도입확대: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"교대제"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(4조 이하에 한함)하고,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※ 다만,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
 - 근로시간 단축제
 - 실 근로시간 단축제: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·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(휴일근로시간 포함)이 2시간 이상 단축
 - 주 근로시간 단축제: 근로기준법 개정(법률15513호)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('18년 7월 신설)
 - 일자리 순환제: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"일자리 순환제"를 실시하고,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
-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
 -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
 - 증가근로자수 = (제도 도입·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) - (제도 도입·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) ※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(소수점 이하 버림),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,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

3) 지원수준

- (지원수준)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~월 100만원 지원, 1~3년간 지원

03.임금감소액 보전 지원

1) 지원대상

- 우선지원대상기업, 주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기업
 - ※ 지원 제외: (공통)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업종, 임금체불로 영단이 공개중인 사업주, (주 근로시간 단축제)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*

2) 지원요건

-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
 - ※ (제도 도입·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) - (제도 도입·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)

3) 지원수준 및 한도

- (지원수준)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,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, 월 최대 40만원 지원
 - ※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